



제 목 | 공사현장 전면의 가설울타리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공사현장의 전면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및 가설 대문은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당해내역의 직접공사비에 별도로 항목과 금액을 명시 해야하는지의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3) 안전대 걸이설비

(4) 개구부 덮개

(5) 위험부위 보호덮개

(6) 현장내 개구부, 팬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펜스, 가설 울타리 등

(7)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질의의 공사현장 전면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및 가설 대문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목 |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음식점을 운영 준비 중에 있는데, 안전관리자 자격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가스 사용량 설계가 4,000 제곱미터가 넘어 도시가스사업법의 기준에 따라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준에 보면 가스 사용량이 4,000 이 넘어가고 근무자가 5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위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에 선임한 가스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시행령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업종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 및 개발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폐기물 처리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자동차 전문수리업, 세탁업 제외),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서비스업 중 하나(음식점업)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를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귀하의 질의의 경우 상기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음식점업의 사업장으로서 상기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규정 적용제외 대상

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규정에 따라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1인의 안전관리자(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규정 해당여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해당여부, 도시가스 사용량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2항 관련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등]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질의 1번 : 시행규칙 제131조 제7항 3호의 직업병에 소음성난청이 포함 되는지?

질의 2번 : 시행규칙 제131조 제7항 3호의 직업병에 근골격계질환 발생자도 포함이 되는지?

질의 3번 : 소음성난청 발생시점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특수검진병원에서 판정하여 노동부에 신고한 시점인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난청 보상금 지급 시점인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5. 삭제 (1994.3.29)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귀하의 질의의 직업병에 걸린 자가 연간 2명 이상인 경우에서 직업병에는 소음성난청 및 근골격계질환도 포함되며, 소음성난청 직업병 발생시점은 특수진단기관의 직업병 판정시점이며, 근골격계질환 직업병은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 판정시점으로 사료됩니다.

제 목 |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업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경력증명서 인정 여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이전사업장에 함께 근무하던 공장장 등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의 “경력확인서”로 경력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서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신청)」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증명서 작성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업주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동료근로자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동 확인서를 해당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노동부(www.molab.go.kr)전자민원창구